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식용 금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2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있음을 명시함.
- 안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부터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구청장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수립할 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사업 등)부터 제8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지난 '24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난 8월 「개식용종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경우 ▲ 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미이행한 경우 등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등 과태료 부과권자를 법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법 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음. 따라서, 해당 조례안을 근간으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식용개농장 및 관련 업계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 입안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 아울러,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진주시가 유일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무한 상황임.

- 다만,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사항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추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향후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폐업이 불가피한 종사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어 관장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4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이예찬 의원(4인)

1. 제안이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 식용 금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등) 구청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